

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
서식18호

(앞쪽)

아동수당 지급 신청서

1. 아동의 보호자

성명		아동과의 관계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
주소				연락처	자택: 휴대전화:

아동수당 신청아동	성명	해외출생 (√ 체크)	복수국적 여부 (√ 체크)	아동수당 입금계좌				
				예금주명	아동과의 관계	금융 기관	계좌번호	비고 ¹⁾
		[] 국내 [] 해외	[] 해당					
		[] 국내 [] 해외	[] 해당					

통지방법 [] 서면 [] 전자우편 _____ [] 문자 메시지 [] 기타()

2. 가족사항 (아동과 가구원/예시: 부, 모, 아동, 아동의 형제·자매)

* (외)조부모는 아동 부모의 사망·이혼·실종으로 인해 (외)조부모가 아동을 실제로 보호·양육하는 경우에만 기재

아동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동거 여부 (미동거사유)	연락처	비고

3.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아동 및 보호자, 가구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.
([] 동의함, [] 동의하지 않음) *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, 「아동수당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신청인) 성명: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<안 내 사 항>			
처리기한	60일 이내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)	관계법률	아동수당법
첨부서류 (해당자)	1. 보호자의 신분증 4. 입금계좌 통장 사본	2.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5.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(상세)	3. 난민인정증명서 6. 국외여권사본

< 유 의 사 항 >	확 인 (√ 체크)
<p>1.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아동수당법」 제7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권의 발생·변경 등의 확인·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지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, 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으며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함을 알려 드립니다.</p>	<input type="checkbox"/>
<p>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아동수당을 받은 자 또는 아동수당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징역,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/p>	<input type="checkbox"/>
<p>3.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·질문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,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지급권이 상실될 수 있으며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/p>	<input type="checkbox"/>
<p>4. 이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제공받은 경우 아동의 국적 및 난민인정여부 등이 변동되었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수당은 환수될 수 있으며,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/p>	<input type="checkbox"/>
<p>5.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</p>	<input type="checkbox"/>